

15

##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(법 §47의4)

### 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신설	<input type="checkbox"/>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령상 설치의무 대상이 아닌 숙박시설이 스프링클러 설치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취득세 면제</li> <li>- 재산세 2년간 면제, 3년간 50% 감면</li> </ul> </li> <li>○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</li> </ul>

### □ 개정내용

- 「소방시설법」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숙박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(간이스프링클러 포함) 설치 유인을 통하여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감면 신설
  - 스프링클러 설치 非의무대상 숙박시설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하여 취득시,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면제(2년간, 이후 3년간 50%)

#### < 소방시설(SP 포함) 설치 관련 행정절차 (「소방시설법」 §6) >

① 숙박시설 건축허가 동의	② 착공 및 감리	③ 완공검사 및 사용승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행정기관) 건축허가 시, 관할 소방서 등 동의 요청</li> <li>· (소방서등) 동의 요청 검토 후 5~10일 내 회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사업자등) 소방시설 공사 착공 및 감리자 지정 등 신고</li> <li>· (소방서등) 수리 통지 및 필요시 보완 요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사업자) 완공검사 요청</li> <li>· (소방서)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</li> <li>· (지자체) 건축물 사용승인</li> </ul>

#### < 스프링클러 설치 확인 및 감면 절차 >

공사업자	소방서(소방본부)	지자체(세정과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서 작성 및 제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및 관할 지자체(세정과)에 공문 통보*</li> <li>* 감면대상(설치의무無 숙박시설)에 한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업주 등이 감면신청 시 관련 정보* 확인 및 처리</li> <li>* 소방서 등에서 통보한 공문에 감면에 필요한 정보 포함</li> </ul>